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868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3일

발 의 자 : 황인구, 김경우, 이태성,
이호대, 김생환, 이병도,
이영실, 김평남, 김종무,
신정호, 정재웅, 정지권,
권수정 의원 (13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지방정부 중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남북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안이유

-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와의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견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난 2019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남북은 판문점에서 4·12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 그러나 최근에는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특별공연 등을 지원하며 남북 교류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는 남북 상호 신뢰구축, 화해분위기 조성 및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실현하고, 전쟁 및 단절이 빚은 남북의 이질적 체제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남북교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서울-평양간 관광루트 개척, 스포츠기반의 교류협력,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역사유적 공동 발굴 등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여건구축과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족 화해 및 공동번영 달성과 남북교류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0.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